



2019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19. 5. 28(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목차



I 법인 관리



II 예산·회계 · 계약



III 보조금



IV 후원금



V 인사 관리



VI 시설 관리

1. 활용방법

-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내용만 발췌하여, 업무유형별로 편제
 - 실제 지도점검시 지적사례 위주 안내
 - 중앙부처, 부산시 등 주요 질의회신 및 판례 등 수록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조건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 등 수록
-
- * 법령 우선순위 : (시설) 개별 복지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공설법 > 민법

1. 활용방법

- **개별 시설 종류별 복지부 또는 우리시의 지침이 우선 적용**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복지부에서 법인과 시설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안내
- **부산시 업무가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 등을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부산시에 맞게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복지부 지침에 없는 내용 또는 좀더 구체화된 규정 등을 부산시
공통 보조금 교부조건, 우리시에 맞는 호봉기준 등으로 제시

2 주요 개정사항

p. 15	부산시 시설법인, 지원법인 설립허가 가이드라인 신설
p. 17	재산취득보고 1월말에서 3월말로 법령 개정
p. 19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p. 20	수익사업 목적 기본재산처분 허가 원칙적 금지
p. 21	보상금 이자 활용 시에도 허가 필요
p. 31	수익사업 목적 장기차입허가는 원칙적 금지
p. 42	지원법인에 한하여 "법인 운영"에 수익금 사용 가능
p. 43	공개채용 원칙, 특수관계자 면접관 참여 불가, 운영위 활용 채용 규정 마련
p. 48	수익사업 수익 미발생 사유로 목적사업 미지원시 시정명령 가능
p. 49	수익사업 수익금 통제 강화

2 주요 개정사항

p. 51	자치구군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공고
p. 53	이사회 불참하는 외부추천이사는 재추천 지양
p. 55	공익법인 세무신고
p. 58~59	공익법인 출연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등
p. 78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편성 기준
p. 80~81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 요한 경우만 법인외계로의 전출 가능 : 재무외계규칙 [별표4]

I 법인 관리



또 하나의
이웃



1 법인의 설립 (p.10)

- 자치구군을 경유하여 시도에서 접수, 검토 후 최종 허가
 - 주된 목적사업 담당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 2개 이상의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1개의 목적사업을 정해야 함
 - 재산규모 등이 적은 경우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으로 전환 재검토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됨
 - 조세회피, 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 불순한 목적 법인 설립 필터링
 - 교육, 문예, 종교, 체육, 장학, 의료 등은 목적사업의 대상이 아님
 - * 다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가능
- 의료기관의 경우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도 불허 원칙(16~)
- 2개 이상 광역시도 속하는 경우 해당 시도 협의 후 분사무소 설치
- 시설법인의 경우 실제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설립 허가



1 법인의 설립 (p.15)

- 부산시 시설법인 설립 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19~)
 - 부산시내에 시설 운영 예정 부지를 법인 명의로 보유할 것
 - ※ 제한물권 설정 및 공유지분 부동산 불인정
 - 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최소 3년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원조달능력이 있을 것
 - (예) 종교단체의 매년 일정액 출연 약정
 - 법인사무국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둘 것
 - 법인사무를 수행하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



1 법인의 설립

○ 부산시 지원법인 설립 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19~)

- 최소 20억원 이상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매년 1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

(예) 모기업의 매년 일정액 출연 약정

- 법인사무국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둘 것
- 법인사무를 수행하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



2 기본재산의 취득 (p.17)

- 매년 **3/31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 구청장군수에게 보고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관변경인가로 재산목록에 즉시 반영하였는지와 무관
- 채권은 부산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에 한해 출연 허용(15~)
* 법령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
-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원칙
-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기본재산 불인정 원칙
* 다만,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 담보 설정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16. 4. 29. 이후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3 기본재산의 처분 (p.20)

- 처분허가 대상 :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
- 기본재산처분허가 → 기본재산처분 → 정관변경인가
- 기본재산 처분으로 발생된 현금
 -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 편입 OR 주무관청 허가를 득한 후 목적사업 사용
- 도시계획 등 의도치 않은 기본재산 변경도 기본재산처분허가 대상
-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용도변경(목적사업 → 수익사업)도 엄격한 심사하 제한적 허용
- 보상금의 이자 역시 보상금, 보상금 관련 과실은 즉시 기본재산 편입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활용



3 기본재산의 처분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돈 = 실체), 기본재산처분은 엄격하게 관리

(例) 주무관청 허가 없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수익사업용으로 임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건물 옥상 이동통신계기(KT,LG,SK)를 설치(부동산계약)

주무관청 허가없이 법인 명의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 설정

주무관청 허가없이 한전과 송전탑 선하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 기본재산 무상임대

(기존) 허가대상(p.28) → (변경) 허가대상 아님

“형법” 업무상 배임(대법원 2015도9569, 2015. 10. 15.) (p.24)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p.25)

- 현금성 기본재산을 원금손실 가능 상품 가입시 주무관청 허가를 득할 것

○ 기본재산의 목적외 사용시

- 허가없는 용도변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위반으로 5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5년 이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까지 방치시 목적용으로 사용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시
→ 면제된 취득세 추징 (지자체장의 용도변경 허가와 무관)
-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지자체장의 용도변경 허가와 무관)



5 기본재산의 임대 (p.27)

-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 법인운영비 등 사용시 기본재산 감소 효과 발생
- 임대는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갱신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 * 계약상대방, 계약조건(기간 제외)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허가대상
(例) 임차인은 동일하나,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된 경우는 허가대상임
- SK, KT, LG U+ 건물 옥상 이동중계기도 부동산임대에 해당, 허가대상
- 집합 건물 임대시 이사회회의록 징구 완화(개별 호실 → 건물 전체) (‘16 개정)
다만, 임대허가를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님. 단순 서류 간소화
- 임차보증금은 법인의 채권. 전세권 설정 등으로 보전수단 마련
- 단순 임대료 받는 경우 : 기본재산수입에 계상
임대업 사업자등록한 경우 : 수익사업에 해당함
 - * 사업자등록 필요여부는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판단



6 차입금 (p.30)

- $(기존장기차입금 + 신규장기차입금) \geq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부채총액) \times 5/100$
→ 기본재산 5%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이 발생되는 시점 이후는 10원의 장기차입금을 더 빌려도 모두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근저당에 의한 차입 이외에 신용 차입은 시도지사 허가대상 아님
-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도 연장시점부터 장기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 근저당 설정하면서 차입시, 차입허가와 별도로 처분허가 필요
- 차입허가 기간내 미상환으로 만기 연장시 재허가 필요
- 법인 VS 대표이사간 차입거래시 1금융권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 (대출이자율 X) 초과시 형법상 배임 여지
-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장기차입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



7 등기 (p.32)

- 민법 제49조에 따라 사무소, 자산총액, 이사 등은 등기사항
- 특히, 정관상 기본재산목록 상 총액과 법인등기부등본상 자산의총액은 일치하여야 함
→ 민법 제9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BY 법원 등기과
- 등기부등본에 사업의 종류에는 정관상 목적사업만 등기하여야 함
등기부등본상 “목적 – 사업의 종류”에 수익사업 기재는 타당하지 않음
(대법원 등기선례)



8 목적사업의 수행 (p.33)

- 정관상 목적사업, 수익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
- 사회적기업 운영코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필요
- 목적사업 미수행시 시정명령(구군), 시정명령 미이행시 설립허가 취소(시)



9 정관의 내용 (p.35)

- p.36 ~ p.45 정관 예시에 따라 정관 개정
→ 최근 법률 개정사항 반영여부 확인(외부추천이사, 특수관계자비율, 잔여 재산 귀속주체(국가/지자체), 재산취득보고기한(3.31) 변경 확인)
- 정관상 규정에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중이지 않은 경우 삭제도록 지도
- 법인사무국에서 별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인가
- 상근임직원 공개채용원칙, 면접대상자–면접관 특수관계자 불가, 법인임원 및 시설의장과 특수관계자는 재무회계 담당 불가
- 시설운영위원회 등 활용하여 상근임직원 채용 등 관련규정 정함
- 정관 불임 “기본재산 목록 및 가액”은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집합건물, 상가건물의 경우 호실명, 호실별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관리



10 정관의 변경 (p.46)

- 승인권자
 - 설립목적, 사무소, 목적사업 → 시장 (부산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 기타 : 구청장, 군수
 - * 기본재산처분허가 : 시장, 정관상 기본재산목록 변경 : 구청장,군수
- 수익사업 허가는 정관변경인가 형식으로 신청, 승인 (15~)
 -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신규 진입 제한 (분사무소 포함)
- 시장 + 구청장군수 허가사항 혼용시, 간인 처리는 구군만
- 정관변경은 신고수리가 아닌 인가사항이므로 재량권 있음
 - 소재지 이전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 자치구군과 협의 후 인가여부 결정



11 수익사업 (p.48)

- 대원칙 : 수익사업 가능, 수익금은 목적사업 투입, 별도회계 분리
-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정관변경 인가)
→ 미허가 수익사업 수행은 고발 대상
- 공설법에 따라 수익을 목적사업 외 사용, 고유목적 위배시 행정처분
-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에 수익금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수익사업 둘중 의료기관 운영 추가 원천적 금지
-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사업 미지원시 시정명령(운영 중단명령도 가능)
- 수익사업 승인시 요건부과/요건이행 철저(목적사업 미지원시 수익사업 중단)
- 수익금 목적외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시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음(공익법인법 제14조3항)



12 법인의 임원 (p.50)

- 외부추천이사 미선임(교체), 이사 7인 미만 : 법인 운영기능 상실
 - 가급적 최소 8인체제로 운영하도록 지도
 - 외부추천이사는 연임하면 해당 지위 상실 (법상 추천절차는 임명시마다 이행)

이사정수	7~8	9~11	12~14	15~17	18~20
외부추천이사	2	3	4	5	6

- 매년 자치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홈페이지 공고
- 외부추천이사는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타 법인의 일반 이사 또는 외부 추천이사도 추천 가능(특수관계자 제외)
- 선임사유 발생 15일 이내, 임기만료 3개월 전 법인에서 주무관청에 추천 요청, 주무관청의 배수 추천자 중 법인에서 선임 (취임 미승낙 유도는 선임 거부행위로 법령 위반 간주)
- 외부추천이사는 자동연임 불가, 재추천에 의한 선임만 가능. 이사회 참여실적이 저조한 외부추천이사는 재추천 지양



12 법인의 임원

-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이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은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함
- 자산총액 **100억 이상** 이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법인회계 + 수익사업회계 + 각 산하시설 회계
- 위 2개 규정의 감사/회계감사는 동일인이면 안됨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이사 임면 보고 : 법령상 구비서류 외 범죄경력조회신서 등
미기재 서류 누락 유의 → 미보고시 과태료 대상
- 특수관계자 : 6촌 혈족, 4촌 인척, 출연자 지배 타법인 종사자 등, 1/5 초과 제한
(例) A법인의 대표이사는 ○○의료법인 출연자인데, ○○의료법인 운영 병원의 원장, 부원장, 행정부장 등을 법인 이사, 감사로 선임



공익법인의 복식부기 적용(p.55)

- ▶ 상증법 제50조의4,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기재부 고시)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함**

자산총액 20억원 이하는 '20년 1월 1일부터, 기타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4항, 제34조 3항 및 제45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 후원금 관리 등
 - (제2조의2)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공익법인과 상속 증여세 (p.58)

-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활용

- 상증세를 회피한 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사실상 공익법인을 장악하여 인건비 등으로 자금 회수

- 상증법 제48조 8항

- 특수관계자인 이사수가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취업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직간접 경비(인건비, 업추비 등) 모두를 가산세로 부과
 -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

* 출연자의 기준 : 전체 출연액의 1/100 또는 2천만원 둘 중 작은 금액 이상



13 법인의 이사회 (p.62)

- 회의 개최 7일전(초일 불산입, 8일), 통보사실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 우편물발송비용영수증 확인
(例) 11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11월 2일 자정까지 개최통지서 발송
- 개최통지시 회의안건을 적시하여 통보, 이사 외에 감사에게도 개최 통지
-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대리행사 불가, 서면결의 불가
- 회의록에 출석임원 전원 기명 **인감** 날인 및 간인
- 법인 홈페이지, 구군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 공개
 - 카페, 블로그 형식 홈페이지 게시한 경우,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어야 함
 - 공개내용에 개인정보 등 포함시 해당내용은 비공개 처리 후 공개



13 법인의 이사회 (p.62)

- **이사회 결의대상에 대한 해석(p.81)**
 -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침 등의 신설에 대하여
해당 지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는 것으로
해당 지침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즉, 예산이 수반되는 지침(가령 임원 직책보조비 지급지침)을 새로이 만들고자 할 경우 해당 지침이 이사회 결의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예산 전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위 새로운 지침신설을 대신하여 결의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보건복지부 2019. 3. 22.)



14 법인 관련 구군 위임사무 (p.66)

- 지도감독 권한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행정처분 권한
 - 시도지사 : 설립허가 취소, 임원해임명령, 직무집행 정지
 - 구청장군수 : 시정명령, 임시이사 해임
- 정관변경 권한
 - 시도지사 : 설립목적, 사무소소재지(분사무소 포함), 목적사업
 - 구청장군수 : 위 3개 이외 전부 (기본재산 목록 변경 포함)
- 설립허가증 재교부는 시장 명의로 발급, 재교부는 시 담당부서에서 수행
 - 법인에서는 자치구군을 경유하여, 시 담당부서에 재교부 신청
 - 별도 법정 서식은 없으며, 공문으로 신청



15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p.67)

○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법 제26조)

-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목적사업 외 사업, 설립허가 후 6개월 이내 목적사업 미시작,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범죄 발생, 임원 정수 위반, 외부추천이사 미선임, 임원 해임명령 미이행, **기타 법, 법에 따른 명령, 정관 위반**
- 의무적 허가취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기본재산 미출연
- 설립허가 취소 위한 시정명령의 시정기한은 6개월이나, 모든 시정명령의 시정기한을 6개월로 둘 필요는 없음
- 자치구군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부산시에 시정명령 미이행사실 통보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등 요구)

○ 해임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 발견,
-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을 지연 또는 거짓 보고
- 외부추천이사, 특수관계자 비율 초과, 감사의 요건 위반하여 임원 선임
- 겸직의무 위반, 직무집행정지명령 미이행
- 시정명령 후 15일 이내 미이행시 해임명령 처분

II 예산·회계·계약





1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p.76)

-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각 시설의 회계
- 이월 : 이사회 의결/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월
 - 법인 산하 시설은 시설운영위 사전 보고 후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함
- 특정목적사업예산
 -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재원 적립시, 구청장,군수 사전 보고 의무
(例) 비지정후원금을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다년간 적립
 - 공익법인은 해당 적립금이 연말결산, 세무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편성 지침 통보 가능
 - 과도한 직책보조비, 예비비 등 통제방안으로 활용
- 세입·세출과목 : 별표 1 ~ 4
 - 기타 5~6, 어린이집 7~8, 장기요양 9~10



1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

-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한 고시 시행
- 추가경정예산 : 편성 확정 후 7일 이내 구청장,군수 제출
- 전용 : 관, 항, 목간 변경
 - 관, 항 전용은 '이월' 절차와 동일, 결산보고시 과목전용조서 첨부
- 예산 초과 지출 금지 : 시설정보시스템은 관,항,목 편성액 초과 지출 가능
- 법인회계로의 전출 : 동일 법인 내 타 시설 자연재해 개보수만 가능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충당 목적 (1%내)
(例) 원래 회계과목으로 지출가능함에도 예비비 지출
- 결산보고서 제출 : 이사회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3/31한 제출
(例) 3/31한 미완성 결산서 제출, 4월에 결산서 수정 → 시정명령 등 가능



5 자료 보관 (p.10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법인관리안내 등
- 서류 보존기간 : 정관, 허가증, 신고증 등은 영구 보존
- 타 법에 의한 서류 보존기간
 - 공익법인 : 상증법상 10년 (법인, 시설, 수익사업)
 -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시설 : 보조금관리법, 감사원법상 5년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상 3년
 - *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 참조하여 증빙자료 구비
 - * 지출관련 내부품의서 등 결재서류도 함께 지출증빙서류에 일괄 보관 (보존기간 상이)
 - * 카드매출전표는 복사 후 원본과 함께 보관 (잉크 유실)



5 자료 보관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만, 타 자금원천 혼용 사용 금지
- 미사용 통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폐쇄, 잔액 시설회계 수입 처리
- 매년 신규 통장 개설 불필요, 필요 수준에서 최소화하여 사용
- 이전 시설명, 대표자 명의, 법인–시설 명칭 혼용 예금주 정비
- 세입세출외 (통장, 현금) 관리 철저



문서24 (p.113)

- <https://open.gdoc.go.kr>
- 온나라 수신처 지정시 대내,대외,문서24 수신처,외부,수신그룹 선택 가능
- 법인, 시설에서는 관공서 수발신 문서를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 가능
- 복지부 지침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메뉴는 제외
 - 보조금 청구, 정산 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보고 등

III 보조금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p.122)

- 대상 : 시 및 자치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변경 등 : 명시적인 승인 요청 –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시 집행잔액 산정방식 명확화
- p.124 [별표 1] 법령, 조례, 지침 필수 확인
- p.125 [별표 2] 대표적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사례
 - 위법행위자, 퇴직공무원 채용 : '19. 10월 ~
 - 공개채용 절차 강화 : 지침 접수일과 '19. 5. 1. 중 빠른 날
 - 재무회계 담당 특수관계자 : '20. 1월 ~
 -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
 - 보조금 취득 자산 매각대 미반납, 축부의금 집행, 보조금 이월, 외부강의 기준, 휴가 기준 위배자 보조금 환수
 - 무자격자에게 기능보강 공사 도급 등

○ 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조치

- 보조금 집행액의 계산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비율까지만 인정)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결정시	예산반영시			
			Case1 (예산총액 동일)	case2 (보조감액 = 총액감액)	case3 (보조감액 < 총액감액)	case4 (당초예산 < 수정예산)
보조금	80	70	70	70	70	70
자부담	20		30	20	0	70
합 계	100		100	90	70	140

○ 2번 사례

- 실제 집행액이 예산 90대비 80만 집행한 경우

80중 보조금 집행액은 70/90의 비율로 산정 (62.2-> 집행잔액은 7.8)

○ 3번 사례

- 실제 집행액이 70인 경우(회계상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70의 집행액 중 보조금으로 집행액은 70/90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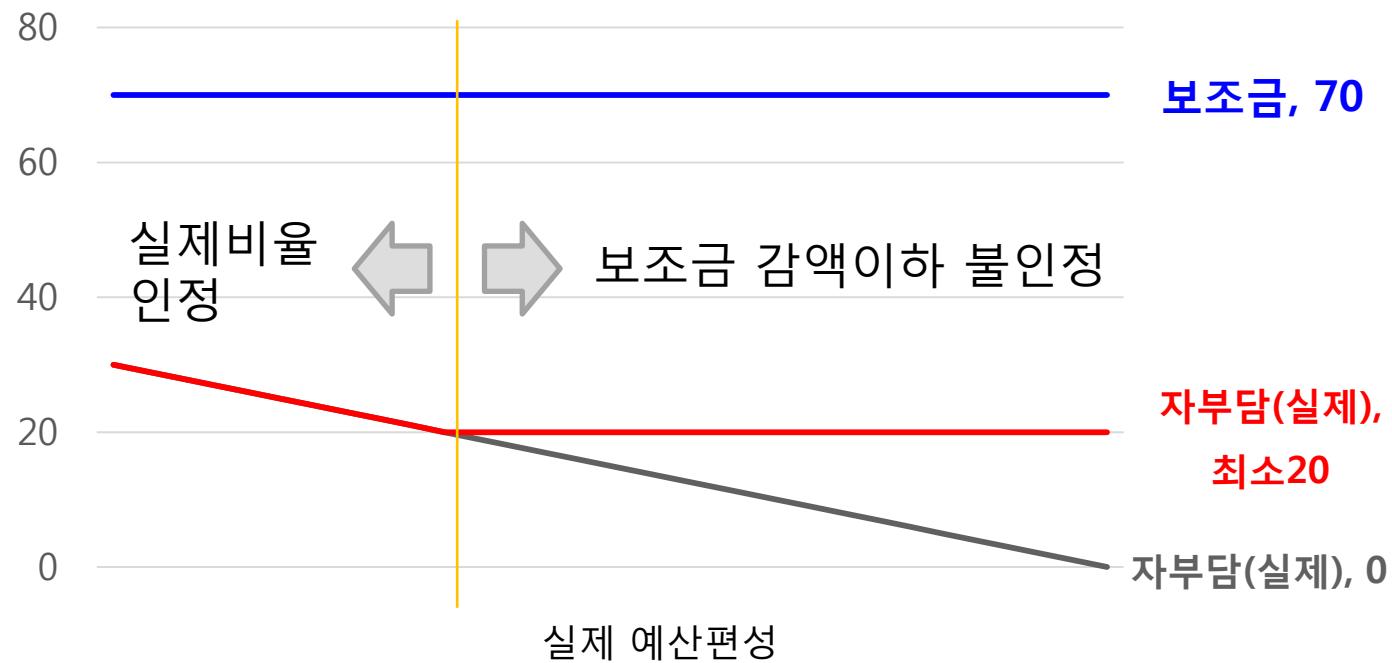
즉, 보조금 집행액은 54.4로 보아 15.5는 집행잔액으로 반환 대상임

- 법인에서는 회계연도 중 보조금:자부담 부담비율 변경 등은 반드시

“통보” 방식이 아닌 “승인요청” 방식으로 주무관청과 협의(단순 “통보”방식 불인정)



- 당초 보조금 80, 자부담 20에서 보조금이 70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p.123

-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상 제목으로 명시하여 승인요청 형식으로 제출토록 할 것
- 일반적인 내용에 물어서 해당내용을 포함하였다는 식으로 제출 후 주무관청에서 별다른 불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무관청에서 승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공통교부조건으로 명시함



○ 앞의 경우처럼 보조금과 자부담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기능보강사업 사례

이외에도 모든 세입과 세출은 자금원천을 고려하여 추진

-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차량/화재보험료, 세금 등 환급금의 세입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의 매각대금 처리
-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포인트)
- 입소자 식대와 종사자 식대 혼용, 2개 이상 시설에서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혼용하여 집행 후 반환 처리

* 보조금/후원금/자부담 등 자금원천별 처리 원칙

(예) 발생이자 : 보조금 – 반납, 후원금 – 후원금,

자부담 – 기타예금이자수입

(법인회계 현금성기본재산 – 배당및이자수입)

3 보조금 주요 집행 제한기준 (p.127)

- 법인, 시설 운영 관련 위법행위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제한시점 : 경찰 기소의견 검찰 승치 또는 검찰 기소(기소유예 포함)된 날짜 중 빠른 날짜
 - 해제시점 : 경찰에서 검찰 승치없이 수사 종결, 검찰 불기소처분일(기소유예 제외) 및 법인 무죄 확정 판결(선고유예 제외) 중 빠른 날짜
 - **19. 10. 1. 기준 위 제한시점~해제시점 해당자부터 적용**
 - 해제시점 기준 해당 연도 인건비 보조금 예산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집행 가능
- 법령상 인건비 집행 제한 해제시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 경과
 - 징역형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7년 경과
- 근무배제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 또는 지원 중단

3 보조금 주요 집행 제한기준

○ 퇴직공무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대상 : 사회복지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아니며, 시설 자부담 지급 가능
- '19. 10. 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하여 적용, 기존 취업되어 있던 자 및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개채용 절차 위배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 재무회계 담당 특수관계자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5 퇴직 급여 (p.157)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12. 7. 26. 이후 중간정산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무주택근로자 주택구입, 전세금, 근로자(가족) 요양비 등)
-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급여 적립대상이 아님(자금원천 불문)
- 개인운영시설의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p.174) (2016. 2. ~)
- 개인운영 장애인그룹홈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p.174) (2017. 2. ~)
 - 1인 운영 그룹홈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 제한 해제
- 퇴직적립금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 금지
-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매월 일정액 적립하는 방식의 경우, 시설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V 인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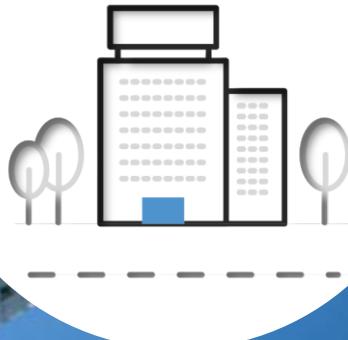
1 채용 (p.192)

- **공개모집 원칙**
- (복지부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例) 공고 종빙자료 조작, 초단기간 공고, 법인홈페이지에만 공고, 채용과 무관한 자격 요구 등
- **면접관–면접대상자, 대표이사(시설장)–회계담당자 특수관계자 배척 원칙**
- 단계별 합격여부 통지(불합격 통지 포함), 서류 반환 요구시 반환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 **일정요건*** 총족시 동일한 시설 내 승진, 인사이동, 동일 법인 내 시설간 인사이동, 법인사무국에서 산하 시설로 인사이동은 공개모집 원칙 미적용
 - * 공채채용자, 법인과 근로계약, 특수관계자 X, 자격기준 총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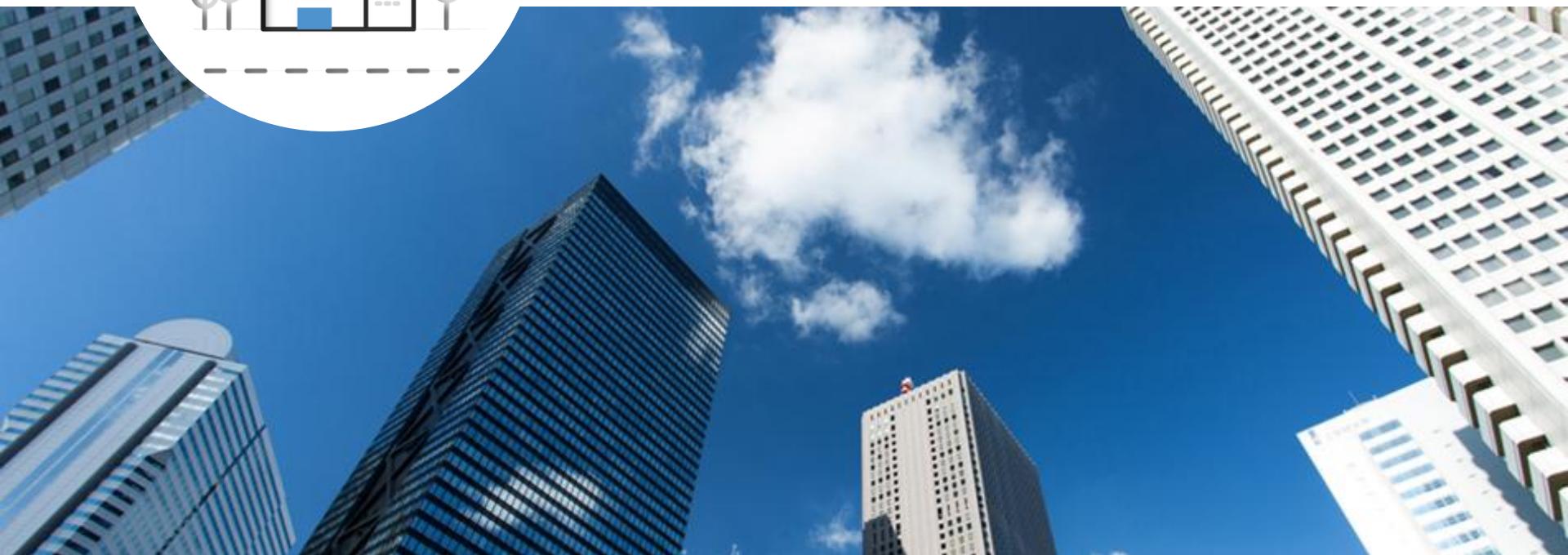


1 채용

- 부산시 공개채용 등 강화 규정(일반 공개채용)
(복지부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부산시 지침) 해당 법인(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3곳 이상(워크넷 반드시 포함)** 사이트에 공고
- 부산시 공개채용 등 강화 규정(특수관계자 공개채용)
(복지부 지침) 특수관계자 인사발령(승진, 인사이동 등)시 공개채용 원칙
(부산시 지침) 복지부 지침 + 면접위원 구성시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 자치구군에서 추천한 외부추천이사 1명 이상 포함**
+ 면접대상자가 특수관계자임을 면접관에서 사전 공지
- 법임 임원,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시설 재무회계 담당 불가
(부산시 지침) '19. 12. 31.까지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전보 미시행시 '20부터 인건비 집행 제한, 요양원은 복지수당 집행 제한



VI 시설관리





시설 설치 · 운영자 = 법인(○), 시설장(x) (p.235)

- 금년부터 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증, 시설설치신고증 상 표시된 명의가 시설을 설치, 운영, 수탁받은 법인으로 서로 동일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통장도 모두 법인명의로 변경 필요(시설관리 p.32)
 - ▶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2항 개정 필요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시설설치신고증상 설치운영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 '20년 12월까지 경과 규정, '21년 1월부터 적용
- 나머지는 '19년말까지 시정, 정비 미완료시 '20년부터 보조금 지급 지양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증

()

등록번호 :

① 법인명(단체명) :

② 대표자명 : 법인 대표이사 이름

③ 개업 연 월 일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본점 소재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기기관 등)

고유번호 :

단체명 :

 대표자성명 : 법인 대표이사 이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사 업 자 등 록 증

(
등록번호 :

① 상호 : ② 성명 :
 ③ 개업 연월일 :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사업의 종류 : 험대 종복 생산
요소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고 유 번 호 증

고유번호 :
 단체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부정수급신고센터 (www.bokjiro.go.kr) ☎ 129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www.acrc.go.kr) ☎ 110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